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4고단2714 공갈, 공갈미수
피 고 인 A
검 사 권주은(기소, 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승훈(국선)
판 결 선 고 2025. 4.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특수강도미수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20. 9.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공갈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20. 9. 1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된 후 2022. 1. 23. 부산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24. 2.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및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24. 6.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공갈



가. 2023. 1.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3. 1. 초순경 제주 B에 있는 피고인의 친구 C의 주거지에서 평소 피해자 D(남, 19세)에게 폭행과 욕설을 일삼아 피해자가 자신을 두려워하는 점을 이용하여 '내 계좌가 잠겼다. 안 쓰는 카드가 있으면 달라'라고 하면서 '내가 해준게 얼마데 이런 것도 못해주냐'라고 말하면서 카드를 주지 않을 경우 폭행을 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토스 체크카드 및 그 비밀번호, 토스 계좌번호(계좌번호 1 생략) 및 그 비밀번호를 교부받았다.

나. 2023. 2. 8.경 범행

피고인은 2023. 2. 8. 01:00경부터 같은 날 02:00경 사이에 제1항 기재 장소 앞에서 제1항 기재 피해자가 이전에 요구한 대출을 받아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면서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23. 2. 14. 제1항 기재 피해자 명의 토스 계좌로 3,000,000원을 입금하게 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2023. 3. 25. 14:44경부터 2023. 3. 26. 23:09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제1항 기재 피해자에게 '저녁 9시까지 목표 금액 1천만 원 채워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D이 계좌로 넣어, 내가 너 땅에 평생 못나게 박아줄게, 내가 뭐하는 사람인지 보여줄게, 대구 D 한명 찾는데 10분 너 땅에 쳐 박아 넣는거 30분



1시간 안에 너새끼 생매장 시켜줄게, 내가 ㅅㄱ 호구 좇으로 보여?, 니내 내가 죽여버리고 징역간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천만 원¹⁾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구하지 못해 송금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한 D 진술 부분)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대화내역, 카카오톡 대화 캡처사진

1. 기업은행 및 토스 거래내역조회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순번 15), 통합사건검색, 개인별 수용현황, 사후적
경합범 당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1) 공소사실 기재 '10,000,000만원'은 오기로 보인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하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나경 _____